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용혜인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19641
------------	-------

발의연월일 : 2026. 6. 30.

발 의 자 : 용혜인 · 손 슬 · 정혜경
윤종오 · 이수진 · 황운하
차규근 · 전종덕 · 소병훈
김남희 · 한창민 의원
(11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부산 반얀트리 리조트 화재, 대전 안전공업 화재 등 최근 발생한 대형 화재 사건에서 소방시설등이 제대로 설치 및 작동되지 않은 사실이 드러나면서, 소방시설 점검제도의 개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현행법은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이 소방시설등이 신설된 경우 건축물 사용승인 이후 60일 내에 점검을 실시하도록 하고 있음.

이와 같은 최초점검 제도는 건축물의 사용승인 이후 소방시설등이 훼손·변경되어 장기간 방치되는 것을 방지하고자 도입되었으나, 소방시설등의 공사·감리업자 또는 이와 이해관계가 있는 자가 최초점검을 수행함에 따라 소방시설등에 대한 부실 공사·감리를 은폐하는 수단으로 악용될 우려가 있음.

대형화재로 대규모 사상자가 발생한 부산 반얀트리 리조트는 화재 당시 소방시설의 설치 및 작동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으며, 관계인이 최

초점검을 수행하도록 되어 있는 법의 취지와 달리 시공사로부터 의뢰받은 전문업체가 최초점검을 시행하여 아전인수식 점검이 이뤄졌다는 지적이 나온 바 있음.

이에 관계인이 최초점검을 수행하도록 한 현행법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관계인이 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하는 특정소방대상물의 최초점검 수행 시점을 소방안전관리자 선임 이후 30일 이내로 조정하려는 것임. 또한 소방시설관리업자가 해당 건축물의 소방시설등을 공사·감리하였거나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최초점검 수행을 제한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행정적 제재 근거를 마련하여 소방시설등의 최초점검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확보하려는 것임(안 제22조의2 신설 등).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제1항제2호를 제3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 중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4조에 따라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이 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하여야 하는 경우: 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한 날부터 30일. 다만, 소방안전관리자를 이미 선임한 경우나 소방안전관리자 선임이 연기 또는 지연된 경우에는 제1호의 기간을 적용한다.

제22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2조의2(자체점검의 제한) 제22조 전단 및 같은 조 제1호·제2호에도 불구하고 관리업자등이 해당 특정소방대상물의 「소방시설공사업법」 제4조에 따른 소방시설공사업자 또는 소방공사감리업자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인 경우에는 자체점검을 할 수 없다.

1. 동일한 사람이거나 동일한 법인인 경우
2.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11호에 따른 기업집단의 관계인 경우

3. 법인의 대표자이거나 고용 관계에 있는 경우
4. 법인과 그 법인의 임직원 관계인 경우
5. 공사업자 또는 감리업자와 「민법」 제777조에 따른 친족관계인 경우

제35조제1항제3호부터 제6호까지를 각각 제4호부터 제7호까지로 하고, 같은 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제22조의2를 위반하여 자체점검을 한 경우

제61조제1항제8호부터 제15호까지를 각각 제9호부터 제16호까지로 하고, 같은 항에 제8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8. 제22조의2를 위반하여 자체점검을 한 관리업자등

부 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2. (생략)

② ~ ⑥ (생략)

<신설>

하는 경우: 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한 날부터 30일. 단, 소방
안전관리자를 이미 선임한 경
우나 소방안전관리자 선임이
연기 또는 지연된 경우에는
제1호의 기간을 적용한다.

3. (현행 제2호와 같음)

② ~ ⑥ (현행과 같음)

제22조의2(자체점검의 제한) 제22

조 본문 및 같은 조 제1호·제2
호에도 불구하고 관리업자등이
해당 특정소방대상물의 「소방
시설공사업법」 제4조에 따른
소방시설공사업자 또는 소방공
사감리업자와 다음 각 호의 어
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인 경
우에는 자체점검을 할 수 없다.

1. 동일한 사람이거나 동일한
법인인 경우

2.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11호에
따른 기업집단의 관계인 경우

3. 법인의 대표자이거나 고용
관계에 있는 경우

4. 법인과 그 법인의 임직원 관
계인 경우

제35조(등록의 취소와 영업정지 등) ① 시·도지사는 관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등록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이의 시정이나 그 영업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제4호 또는 제5호에 해당할 때에는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1. ~ 2. (생략)

<신설>

3. ~ 6. (생략)

제61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 7. (생략)

<신설>

5. 공사업자 또는 감리업자와 「민법」 제777조에 따른 친족관계인 경우

제35조(등록의 취소와 영업정지 등) ① -----

-----.

1. ~ 2. (현행과 같음)

3. 제22조의2를 위반하여 자체 점검을 한 경우

4. ~ 7. (현행 제3호부터 제6호까지와 같음)

제61조(과태료) ① -----

-----.

1. ~ 7. (현행과 같음)

8. 제22조의2를 위반하여 자체 점검을 한 관리업자등

<p><u>8.</u> ~ <u>15.</u> (생략)</p> <p>② (생략)</p>	<p><u>9.</u> ~ <u>16.</u> (현행 제8호부터 제15호까지와 같음)</p> <p>② (현행과 같음)</p>
--	---